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심사 강화

1.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관세심사 강화 배경

2013년도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하여 관세청은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심사 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 간 국제거래가격은 해당 거래가격을 당사자들간에 조정하기 때문에 내국세율과 관세율을 고려하여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관세측면에서는 관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가격을 인하 조정하는 경우 관세탈루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본·지사 간의 거래 등과 같은 특수관계자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관세심사 업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본·지사 관계 등과 같이 특수한 관계가 있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당사자 간의 국제거래를 의미합니다.

관세청이 2013년도부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관세심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은, 최근 수년 간의 기업심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의한 관세탈루 위험이 여전히 높고, 최근에는 그러한 특수관계를 악용하여 수입가격 조작 외에 물품가격을 수수료로 편법 지급하는 등 관세탈루 행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관세심사의 중요성

관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년 6월 기준, 약 14만개 수입업체 중 해외의 본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수입업체는 약 5천 개 업체로서 약 3.5%에 불과하나, 이들 수입업체의 수입금액은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입금액인 1,834억불 대비 약 32.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관계가 있는 업체들의 추정세액은 2012년 6월 기준으로 과거 4년 간 전체 수입업체에 대한 추정세액합계인 1조 7억 원에 대비 약 70%에 상당하는 7,013억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물품에 대한 추정세액이 많은 이유는, 동 업체들의 수입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 비해 그러한 특수관계를 이용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왜곡의 위

힘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 로열티, 구매수수료 등 기타 이슈에 대하여도 관세심사 강화 예상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는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낮게 조정하여 관세를 탈루하는 방법이 종래부터 이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고, 최근에는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를 로열티, 구매수수료 및 연구개발비등의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관세탈루를 시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도 관세청은 매출총이익율이 국내 동종업체보다 높거나 변동이 심하여 저가신고의 개연성이 높은 업체와 로열티 등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여 수입신고 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분석하여 관세심사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특수관계의 영향에 의한 저가신고 등 세액탈루 여부 이외에도, 로열티지불금액 및 구매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심사와 외국환거래, 원산지표시, FTA협정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수출입 요건확인의 적정성 등 기타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관세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 세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대영 고문이나 임준희 관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이대영 고문 | TEL. 02 316 4348 | E-Mail. dylee@shinkim.com |
| ● 임준희 관세사 | TEL. 02 316 4487 | E-Mail. jhlim@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